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5
----------	----

2018. 11. 29.(목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최경천 의원 등 7인
- 나.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31일
- 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05일
- 라. 상정일자 : 2018년 11월 23일
 -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심기보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, 각 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·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용어 정비
 - 통합기금관리관 → 통합기금운용관
 - 통합기금운용관 → 분임통합기금운용관
- 나. 용어 및 문구 정비 (안 제11조의2, 12, 13조)
 - 해촉 → 위촉 해제, 회무 → 위원회의 사무, 잔임기간 → 남은 임기

다.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연장

- (기존) 2018.12.31.까지 → (연장) 2023.12.31.까지

3. 검토보고 요지 (최영지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용어를 정비하고,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6조는 기존 통합관리기금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한 것임.
 - (현행) 통합기금관리관 → (개정) 통합기금운용관
 - (현행) 통합기금운용관 → (개정) 분임통합기금운용관

※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4조(기금의 지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

- 안 제11조의2, 제12조, 제13조3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함.
 - (현행) 해촉 → (개정) 위촉 해제
 - (현행) 회무 → (개정) 위원회의 사무
 - (현행) 잔임기간 → (개정) 남은 임기
- 안 제18조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한 것으로,
 -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은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1항의 “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

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” 는 규정과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“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” 는 규정에 따라,

-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였으며,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(8.14.)을 거친 것으로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은 타당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, 기금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을 개정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해당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경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5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10월 31일
발 의 자 : 최경천, 박상돈, 박형용,
심기보, 육미선, 이상욱,
이상정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, 각 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·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용어 정비
 - 통합기금관리관 → 통합기금운용관
 - 통합기금운용관 → 분임통합기금운용관
- 나. 용어 및 문구 정비 (안 제11조의2, 12, 13조)
 - 해촉 → 위촉 해제, 회무 → 위원회의 사무, 잔임기간 → 남은 임기
- 다.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연장
 - (기존) 2018.12.31.까지 → (연장) 2023.12.31.까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다. 협 의 :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
- 라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” 을 “통합기금 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합기금관리계획” 을 “통합기금운용계획” 으로, “통합기금관리관” 을 “통합기금운용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합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” 을 “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 운용” 으로, “기금운영” 을 “통합기금 운용” 으로, “기금운용” 을 “통합기금 운용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통합기금관리관” 을 “통합기금운용관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통합기금관리관” 을 “통합기금운용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통합기금운용관” 을 “분임통합기금운용관” 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기금의 운용·관리” 를 “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 등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9인 이내의 위원으로” 를 “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합기금관리관” 을 “통합기금운용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” 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 으로, “위촉하며” 를 “임명 또는 위촉하며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도 본청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

제10조제3항제4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자” 를 “사람” 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” 를 “통합기금의 조성
과 운용관리 등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기금운용계획” 을 “통합
기금운용계획” 으로, “기금운용의” 를 “통합기금운용의” 로 하며, 같은 조
제3호 중 “기금” 을 “통합기금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금” 을
“통합기금” 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3항 중 “해촉될” 을 “위촉 해제될” 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그 회무” 를 “위원회의 사무” 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잔임기간으로” 를 “남은 임기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
중 “당연직 위원” 을 “위원 중 도지사로부터 임명된 공무원인 자” 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기금결산” 을 “통합기금 결산 등” 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기금” 을 “통합기금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
합기금관리관” 을 “통합기금운용관” 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통합기금관리관” 을 “통합기금운용관” 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2018년 12월 31일” 을 “2023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재원)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	제3조(재원)	----- -----.	제3조(재원)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	1. ~ 3.	(현행과 같음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기타</u> 수입금		4. <u>그 밖의</u> --		4. <u>그 밖의</u> --
제4조(용도) ① (생략)		제4조(용도) ①	(현행과 같음)	제4조(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 규모가 제1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,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</u>		② <u>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</u>	----- ----- ----- -----.	② <u>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운용 · 관리) ① 통합기금은 <u>통합기금관리계획에</u> 의하여 도시사가 운용 · 관리하되,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<u>통합기금관리관</u>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		제5조(운용 · 관리) ①	----- <u>통합기금운용계획</u> ----- ----- ----- <u>통합기금운용관</u> ----- -----.	제5조(운용 · 관리) ① ----- <u>통합기금운용계획</u> ----- ----- ----- <u>통합기금운용관</u> ----- -----.
② <u>통합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도시사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.</u>		② <u>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 운용</u>	----- ----- <u>통합기금 운용</u> ----- ----- <u>통합기금 운용</u> ----- -----.	② <u>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 운용</u> ----- ----- <u>통합기금 운용</u> ----- ----- <u>통합기금 운용</u> ----- -----.
③ (생략)		③	(현행과 같음)	③ (현행과 같음)

현	행	개	정	안
	④ 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<u>통합기금관리관</u> 이 지정하는 도 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	④	----- ----- <u>통합기금운용관</u> ----- -----.	
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	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 1. <u>통합기금관리관</u> : 기획관리실장 2. <u>통합기금운용관</u> : 예산담당관 3. (생략)	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	----- ----- -----.	1. <u>통합기금운용관</u> ----- 2. <u>분임통합기금운용관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
제9조(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	<u>기금의 운용·관리</u>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9조(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	<u>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</u> 등----- ----- -----.	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	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9인 이내의 위원</u> 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통합기금관리관</u> 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	----- ----- <u>9명 이내의 위원</u> 으로 <u>성별균형</u> 을 고려하여 --. ② ----- <u>통합기금운용관</u> ----- -----.	

현행	개정안
<p>③ 위원은 <u>도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</u> 중에서 도지사가 <u>위촉하며</u>,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<u>자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③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----- ----- <u>임명 또는 위촉하며</u>, ----- -----.</p> <p>1. <u>도 본청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</u></p> <p>2.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<u>기금의 조성</u>과 <u>운용관리</u>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</p> <p>1. <u>기금운용계획</u> 수립, 예산 및 결산, <u>기금운용의 성과분석</u>에 관한 사항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기금의 설치목적</u> 달성 및 설립 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</p> <p>4. 5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<u>기금의 관리·운용</u>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	<p>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<u>통합기금의 조성</u>과 <u>운용관리</u> 등----- -----.</p> <p>1. <u>통합기금운용계획</u> ----- <u>통합기금운용의</u>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통합기금</u>----- -----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통합기금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<u>해촉</u>될 수 있다.</p>	<p>제1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위촉 해제</u>될 --.</p>
<p>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<u>그 회무</u>를 총괄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----- <u>위원회의 사무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임기간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<u>당연직</u>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13조(임기) ① ----- ----- ----- <u>남은 임기</u>로-----.</p> <p>② <u>위원 중 도지사로부터 임명된 공무원인 자</u>-----.</p>
<p>제14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<u>기금결산</u>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4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통합기금 결산</u> 등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예탁금의 기한전 상환) ① 예탁금은 <u>기금</u>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예탁금의 기한전 상환) ① ----- ----- <u>통합기금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15일전까지 미리 그 취지를 <u>통합기금관리관</u>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합기금운용관</u>----- -----.</p>
<p>제16조(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<u>통합기금관리관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6조(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통합기금운용관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8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</p>	<p>제18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3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4조(기금의 지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